

기술정책협동과정 개정 내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9조(학위논문 심사위원회 구성) ① 석사 학위과정의 경우, 3인의 학과교수 또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학과교수는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 하에 학교 전임교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외부 심사위원은 전공분야 및 논문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박사 및 석·박사 통합학위과정의 경우, 5인의 학과교수 또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학과교수는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 하에 학교 전임교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외부 심사위원은 전공분야 및 논문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제외한 학과교수로 정한다. ④ 심사위원 자격요건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내규를 따른다.	제29조(학위논문 심사위원회 구성) ①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3인의 학과교수 또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학과교수는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 하에 학교 전임교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외부 심사위원은 전공분야 및 논문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u>개정된 35조 7항에 의해 졸업요건으로 논문심사를 받는 경우 심사위원회 운영위원이 포함해야한다.<개정 2018.09.14.></u> ② 박사 및 석·박사 통합학위과정의 경우, 5인의 학과교수 또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학과교수는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 하에 학교 전임교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외부 심사위원은 전공분야 및 논문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제외한 학과교수로 정한다. ④ 심사위원 자격요건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내규를 따른다.	
제30조(학위논문 예비심사) ① 예비심사의 일시는 대학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서 지도교수와 심사위원들이 협의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예비심사일 3주 전까지 예비논문을 심사위원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이 지연될 경우 예비심사일은 재조정되어야 한다. ③ 예비심사의 합격은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고, 박사 및 석·박사 통합학위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5인 중 4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학생은 1학기 이상이 경과한 후에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30조(학위논문 예비심사) ① 예비심사의 일시는 대학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서 지도교수와 심사위원들이 협의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예비심사일 3주 전까지 예비논문을 심사위원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이 지연될 경우 예비심사일은 재조정되어야 한다. ③ 예비심사의 합격은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고, 박사 및 석·박사 통합학위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5인 중 4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학생은 1학기 이상이 경과한 후에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u>④ 개정된 35조 7항에 의해 졸업요건을 만족시킨 경우 예비심사와 본심사사이 기간에 예비심사 지적사항을 반영한 연구로 중간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간심사는 본심사 3주 전에 통과되어야 한다. 중간심사의 합격은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본심사의 합격은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고, 박사 및 석·박사 통합학위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5인 중 4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학생은 1학기 이상이 경과한 후에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추가 2018.09.14.></u>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31조(학위논문 본심사) ① 학생은 본심사 1주 전까지 【학위논문 제출자격 확인서】를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임교수는 이를 검토한 후 모든 자격조건이 만족된 경우에만 논문제출 자격이 있음을 통보한다. ② 본심사의 일시는 대학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서 지도교수와 심사위원들이 협의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다. ③ 학생은 예비심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들을 서면으로 각 심사 위원들에게 본심사 2주전까지 보고하여야 하고, 이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심사는 취소되며, 심사일정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④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본심사의 합격은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고, 박사 및 석·박사 통합학위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5인 중 4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학생은 1학기 이상이 경과한 후에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학위논문 본심사) ① 학생은 본심사 1주 전까지 【학위논문 제출자격 확인서】를 학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임교수는 이를 검토한 후 모든 자격조건이 만족된 경우에만 논문제출 자격이 있음을 통보한다. ② 본심사의 일시는 대학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서 지도교수와 심사위원들이 협의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다. ③ 학생은 예비심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들을 서면으로 각 심사 위원들에게 본심사 2주전까지 보고하여야 하고, 이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심사는 취소되며, 심사일정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u>개정된 35조 7항에 의해 졸업요건으로 논문심사를 받는 경우 중간심사에서 지적 받은 사항들을 서면으로 각 심사 위원들에게 본심사 2주전까지 보고하여야 하고, 이 기간 내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심사는 취소되며, 심사일정을 재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09.14.></u> ④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본심사의 합격은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고, 박사 및 석·박사 통합학위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5인 중 4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학생은 1학기 이상이 경과한 후에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제35조(박사과정 박사학위논문 제출자격) ① 본 학과의 박사과정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4.3만점) 이상인 자 3. 논문제출자격시험(종합시험,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4.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로서 연구등록을 한 자 5.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논문지도교수로부터 2학기 이상 지도받은 자 6. 입학일로부터 7년 이내에 학위논문의 심사완료 예정자. 다만, 휴학 및 제적기간 그리고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2년 연장한 기간은 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국내외 학술행사에서 1회 이상 학술발표 또는 초청강연을 한 자 (발표 및 강연 예정인 경우, 해당 학술행사의 세부행사 진행표	제35조(박사과정 박사학위논문 제출자격) ① 본 학과의 박사과정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1.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4.3만점) 이상인 자 3. 논문제출자격시험(종합시험,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4.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로서 연구등록을 한 자 5.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논문지도교수로부터 2학기 이상 지도받은 자 6. 입학일로부터 7년 이내에 학위논문의 심사완료 예정자. 다만, 휴학 및 제적기간 그리고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2년 연장한 기간은 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u>7.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u> <u>가. 국내외 학술행사에서 1회 이상 학술발표 또는 초청강연을 한 자(발표 및 강연 예정인 경우, 해당 학술행사의 세부행사 진행표 제출)</u>	

현행	개정(안)	비고
제출) 나. 국제 전문학술지(SCI, SCIE, SSCI)에 1편 이상 논문게재(또는 게재확정)한 자이거나, 또는 학과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연구업적(저서, 정책실현 등)을 갖춘 자 -단, 국내외 학술행사 발표 1회 및 국제 전문학술지(SCI, SCIE, SSCI) 논문은 각각 한국연구재단 등재 논문지 1편 및 2편으로 대체 가능함	나. 국내외 전문학술지(SCI, SCIE, SSCI, KCI)에 1편 이상 논문게재(또는 게재확정)한 자이거나, 또는 학과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연구업적(저서, 정책실현 등)을 갖춘 자<개정 2018.09.14.> -단, 국내외 학술행사 발표 1회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논문지 1편으로 대체 가능함<개정 2018.09.14.>	

[붙임] 개정 내규안 전문 1부